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제안설명서

2022. 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조정실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조정실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,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」(1992. 9. 30.)가 제정된 이후, 區 상징물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區의 특색과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
- 또한, 2021년 6월 구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비둘기 배설물, 은행나무 열매 악취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區를 대표하는 상징물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,
- 區의 독창적 이미지 창출과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 9월, 상징물 변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상징물 공모(2021. 10. 12.~11. 9.)→주민 설명회(2021. 10. 20.)→후보안 선정(2021. 11. 12.)→온·오프라인 주민 선호도 조사(2021. 11. 17.~12. 15.)→상징물변경 심의위원회(종합점수 산출/2021. 12. 17.)를 통해 최종 선정된 새로운 상징물(장미, 편백나무, 원앙, 수달)로 변경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구의 꽃	구의 나무(변경)	구의 새(변경)	구의 동물(추가)
			
장미 (사랑과 번영 상징)	편백나무 (건강과 힐링 상징)	원앙 (부부금슬, 화목 상징)	수달 (친환경 상징)

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는 상징물 조례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고
- 안 제2조에서는 새로운 상징물 반영 및 표현체계를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2년 1월 2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구민들의 인식조사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새로운 상징물로 변경 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8201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. 26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
(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2021년 6월 구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수요조사 결과에서 비둘기, 은행나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匾를 대표하는 상징물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, 상징물변경심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상징물 공모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상징물로 변경해 匾의 정체성 확립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징물 조례 제정 목적 구체화(안 제1조)
- 새로운 상징물 반영 및 표현체계 정비 등(안 제2조)
 - 새로운 상징물 반영(장미, 편백나무, 원앙, 수달)
 - 상징물 표현체계 정비(구화⇒구의 꽃, 구목⇒구의 나무, 구조⇒구의 새, 구의 동물)
- 상징물의 활용범위 확대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현행조례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1. 12. 31.~2022. 1. 20.)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5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징물의 종류)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의 꽃은 장미로 한다.
2. 구의 나무는 편백나무로 한다.
3. 구의 새는 원앙으로 한다.
4. 구의 동물은 수달로 한다.

제3조(활용) 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】 현행 조례

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

(제정) 1992.09.30 조례 제 240호

(일부개정) 2005.09.21 조례 제660호 (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
일괄개정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)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목은 은행나무로 한다.
2. 구화는 장미로 한다.
3. 구조는 비둘기로 한다.

제3조(활용)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.

1. 구 간행 각종 책자, 홍보지 발행시
2. 구목,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
3.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05. 9. 21 조례 제66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